

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

구분	질 의	답 변
1	<p><질문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3조(사업내용) p7~8 - 공모지침서 p7 : * 복합시설의 경우 시티타워와 보행 및 차량동선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, 시티타워 기본설계를 준수할 것 - 공모지침서 p8 : * 복합시설은 예시(안)이고, 건축개요는 복합시설과 시티타워가 단일 건축물 형태의 기본설계내용으로 향후 실시설계,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음 <p><질의 1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합시설의 면적 증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	<p>•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복합시설의 연면적은 증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자가 시티타워 기본설계 미준수시에 따른 책임 및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.</p>
	<p><질문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3조(사업내용) p12 - 사업방식별 대부료 및 공급가격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(복합시설 부지) <p><질의 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금액(348,006,300원/년), 매각금액(41,720,640,000원)으로 임대(월)/매각 금액 비율이 1:1439인데, 복합시설부지 임대 또는 매각 방식의 선정을 위해 각 금액 산정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	<p>•복합시설부지 대부료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및 제31조(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)에 따라 산출된 가격입니다. <p>•복합시설부지 매각금액 산정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합용지 세부처분계획(청라국제도시 2-②단계 실시계획, 2013.8.12)에 따라 현재 부지 소유자인 LH가 경제청에 통보한 가격입니다.